

가정 상담

통권507호

2025

11

KOREA FISC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SN 1277756



Don mate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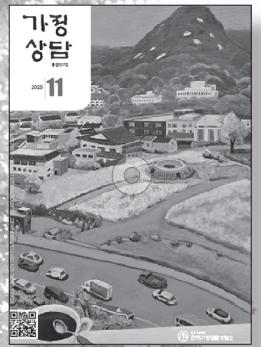
가족의 정신 건강과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동지교실'이 지난 10월 15일 본소 강당에서 열려 인하대학교 황순찬 교수가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를 주제로 강연했다. (관련 기사 35면)



지난 10월 29일 상담소는 2025년도 전화자원봉사자 모임을 열고 지난 한 해 헌신한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관련 기사 35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한 우리, 신뢰받는 우리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획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관 ②
- 23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⑫
- 26 • 가정폭력상담실
- 30 • 어떻게 할까요
- 33 • 새로 들어온 책
-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돌봄과 지원’ 그리고 가정

상담소는 우리 사회의 가정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창구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때 상담소가 함께 해야

지난 10월 29일은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이었습니다. 2023년 유엔 총회에서 돌봄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 성평등 실현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며 이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돌봄이나 지원은 개인의 생존과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고 이 중차대한 일을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 특히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는 사적 부담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전 세계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합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돌봄과 지원에 대한 전 지구적 논의가 더 본격화되기를 바라며, 그와 더불어 우리 사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돌봄과 지원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가정의 사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상담소는 해마다 지난해의 통계를 정리한 상담통계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소 창설 30주년의 해인 1986년 〈상담사건통계 1956.8.25.~1986.7.31.〉를 발행한 이후 1987년 제31차년도부터 해마다 통계집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담통계는 급격한 우리 사회 가정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례로 십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가 11월이 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상담실에서 ‘속이 상해도 김장은 해야 하니까요’라든가 ‘아이 입시가 있어서 당장 찾아올 수 없었어요’라는 내담자들의 말에서 실마리를 찾아 해석할 수 있는 통계였습니

다. 하지만 십여 년 전부터 11월의 통계는 달라졌습니다. 전달과 비슷하거나 전달에 명절 연휴가 있다면 그때보다 오히려 상담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사회상의 변화를 이해할 때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초겨울의 김장이 가정의 큰 행사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비록 김장이 집안의 큰 문제라 해도 그것을 내 인생보다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혼인까지 모두 치르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노년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우선은 더 활용이 쉬운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상담이나 인터넷망을 통한 화상상담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11월의 통계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문제가 줄어들거나 사안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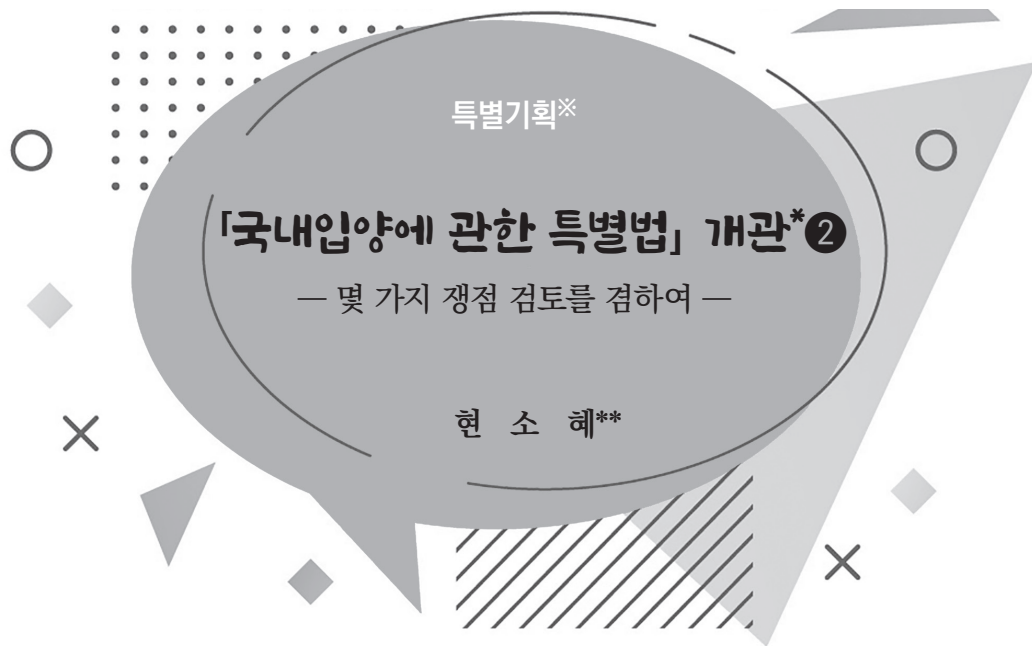
이른바 ‘자녀(가족)살해 후 자살’과 같은 극단적 문제에 대해 이 지면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사에 나타난 최초의 중대범죄는 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한 범죄가 혈연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살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276명 중 배우자와 부모, 자녀, 친인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가 131명(47.5%)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즉 가장 중대한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간병에 지쳐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확인된 것만 22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3건이었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26건까지 늘었고,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

음’으로 처리된 사건이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간병요인이 배제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돌봄의 끝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족 사이의 중범죄에는 돌봄의 비극 혹은 상속을 둘러싼 분쟁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감정적 불화가 더 깊이 쌓여 폭발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가족 안에 고립되어 살다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어 막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앞서 ‘간병살인’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가족 살해 후 자살이나, 돌봄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살인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정책 등으로 상당 부분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식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족 살해 범죄가 다른 나라들보다 대체로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호주제의 폐지 등으로 인해 가부장적 인식 등이 희석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내 혹은 자식은 내 소유’라는 기저의 의식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족 살해의 변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는 간병 끝에 간병인이 경제적, 심리적 벼랑으로 몰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구성원 전반의 문제에 관해 상담소는 그 어떤 기관보다 많은 현장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그로부터 비롯된 해결방안 그리고 전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지원의 사회화와 더불어 가족과 가정에 대해 생애주기 전체를 올바른 법과 제도, 정책에 담아내려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한 이때 상담소의 역사와 경험이 보다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차 례

- I. 서 론
- II. 연 혁
- III. 국내입양특별법의 의의와 입양의 원칙
- IV. 국내입양의 성립과 관련된 법률관계**
- V. 국내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체계
- VI. 결 론

IV. 국내입양의 성립과 관련된 법률관계

이하에서는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입양 절차의 단계에 따라 순차로 법에 따른 국내입양의 성립요건 및 효과 등을 살펴본다.

1. 입양의 의뢰 단계: 양자에 관한 성립요건

가. 법의 태도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¹⁾에 따른 18세 미만²⁾의 보호 대상 아동³⁾으로서 시·도지사등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입양의 보호조치’)에 의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

※ 편집자 주 - 본소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인 현소혜 교수의 최근 논문을 지난 호에 이어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다만 지면 관계상 영문 표기,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은 게재하지 않았다.

* 본 논문은 2025. 7. 3. 법원행정처와 가족법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저자가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

*** 투고일 2025년 7월 6일, 심사일 2025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5년 7월 21일.

-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2) 입양특별법과 관련해 적용대상을 민법에 준해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장병주(2013), 528면 참조. 아동복지법과의 체계상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 현소혜, 주해친족법, 1032-1033면 참조. 국내입양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적용대상인 아동의 연령을 직접 규정하는 대신 아동복지법을 원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3) 입양특별법과 관련해 적용대상을 보호 대상 아동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로 소라미(2018a), 313면; 소라미(2018b), 10면; 윤성승·허남순(2014), 35면 참조.

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에 한정된다(제13조 제1항).⁴⁾ 입양특례법 제9조⁵⁾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이미 시·도지사등이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호조치를 한 때에만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절차가 개시될 수 있게 되었음은 II.5.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국내입양특별법은 이 점을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종래 아동복지법 제15조와 입양특례법 제9조 간의 관계에 대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제거하였다.

입양의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① 시·도지사등이 그 관할 구역에서 입양이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한 경우, ② 부모 기타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한 경우, ③ 시·도지사등 이외의 자가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시·도지사등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경우,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자가 직접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⁶⁾

시·도지사등이 입양의 보호조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특히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통해 친생부모 등에 의한 원가정 양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양의 보호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 1문).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등은 입양의 보호조치에 앞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

며, 입양의 보호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해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2문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⁷⁾ 또한 시·도지사등은 입양의 보호조치에 앞서 보호 대상 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조치에 관해 보호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⁸⁾

나. 해석론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양자될 자는 민법상 양자에 관한 성립요건도 갖추어야 하는가. 법 제9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견해⁹⁾와 법 제13조 제1항이 민법에 대한 특칙을 이루므로, 민법상 양자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별다른 실익은 없다. 민법은 양자될 자에게 ① 양부모될 자보다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민법 제877조), ②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874조 제2항), ③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873조 제1항), ④ 친양자입양이라면 아직 미성년자일 것(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을 요구하는데, ‘만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 국내입양특별법의 특성상 위와 같은 요건이 실제로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의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행 역량 및 지역별 편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문헌으로 박주영(2024), 96면 참조.

5) 입양특례법 제9조의 내용에 관해서는 각주 33) 및 위 각주가 원용하고 있는 각주 23) 참조.

6)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보호출산에 의해 태어난 아동을 입양이 가능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출산 전에 친모로부터 입양 동의 서류를 받았던 입양특례법 시절의 불법적 행위를 답습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원가정 양육 상담, 생부의 입양 동의권이나 생모의 입양 철회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하는 견해로 조소연·전민경(2024), 162-167면 참조.

7)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 2문 전단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4.

8)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 2문 후단 및 제5항. 단,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단서).

9) 현소혜, 주해친족법, 1061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⁰⁾

2. 입양의 보호조치 단계:

입양의 승낙 또는 동의에 관한 요건

시·도지사등은 입양의 보호조치를 하기에 앞서 ①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아동 본인·법정대리인 및 친생부모의 승낙 및 동의를 갖추었는지 또는 승낙·동의 의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법 제13조 제2항), ② 입양 동의 및 승낙 전에 아동 본인·법정대리인 및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¹¹⁾ 각각의 의미를 ① 법 제15조 및 제16조와 ② 법 제17조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승낙 및 동의

(1) 법의 태도

법에 따른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①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입양 승낙과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② 아동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 본인의 입양 승낙과 법정대리인 및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각 필요하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에게 소재 불명이나 승낙·동의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그 동의나 승낙을 철회할 수도 있다(법 제15조 및 제16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상 친양자입양에서의 승낙·동의 요건 및 그 면제 사유에 관한 조문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한다(민법 제908조의2 제

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중래 입양특례법 제12조는 ① 입양 대상 아동을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②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③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외에 아동 본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양 승낙과 입양 동의, 친생부모의 동의권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개념에 혼선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위 법상 입양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알선과 아동 본인 또는 친생부모 등의 동의만으로 성립하는 기관입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¹²⁾와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형 입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¹³⁾가 대립해 왔으며, 그 결과 민법상 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승낙 또는 동의에 관한 조문이 입양특례법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할 것인지,¹⁴⁾ 친생부모가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는지,¹⁵⁾ 친생부모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의 동의 없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어느 조문을 준용해야 하는지¹⁶⁾ 등 여러 가지 쟁점에서 해석론상 난점이 있었다.

반면 법은 민법상 친양자입양에 준해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락 또는 동의 규정과 친생부모에 의한 동의 규정을 나누어 규정하는 구조를 택하였으므로, 이로써 법에 따른 입양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형 입양임이 명백해졌다.¹⁷⁾ 다만, 국내입양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민법과 다르다. 첫째,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지는 입양 허가 청구 시가 아니라 입양 허가 심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10) 이하 IV.6.가.의 서술 참조.

11)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던 견해로 현소혜(2010), 583-585면; 현소혜(2021), 209면 참조.

12) 舊 입양촉진특례법상 입양에 관한 견해로서 현소혜(2010), 557-560면.

13) 舊 입양촉진특례법상 입양에 관한 견해로서 김상용(2009), 220-221면; 장병주(2013), 520면 참조.

14) 이를 긍정하는 견해로 김상용(2009), 221면; 장병주(2013), 521면. 특히 김상용(2009), 236면은 친생부모의 보호 의뢰 당시 입양의 동의를 있었더라도 이와 별개로 입양 성립 당시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으로서 다시 한번 입양 승낙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사실상 백지식 동의 내지 익명입양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 현소혜(2010), 560면 참조.

15) 이에 관한 논의로 현소혜(2013), 101-102면; 현소혜, 주해친족법, 1089-1090면 참조.

16) 이에 관한 논의로 현소혜(2013), 102-103면 참조.

17) 입법론으로서 가정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형 입양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던 견해로 현소혜(2010), 586-589면 참조.

을 명시하였다(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민법의 해석론상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¹⁸⁾ 둘째,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법 제30조 제2항).¹⁹⁾ 「국제사법」 제71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5항 및 제16조 제4항).²⁰⁾ 입양특례법 제12조 제6항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반면 舊 「입양특례법」부터 이어져 온 입양특례법 제12조 제3항 상의 백지식 동의 제도는 드디어 폐지되었다.²¹⁾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면서 입양기관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제9조 제2호 부분을 삭제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2) 해석론

법 제13조 제2항이 시·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입양의 보호조치 전 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와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 따라 입양의 승낙과 동의 관련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미리 확인하라는 취지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승낙 또는 동의 요건이 갖추어졌거나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입

양의 보호조치가 내려진 후 아직 입양 허가재판이 있기 전까지 시·도지사등이 법 14조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경우²²⁾ 등과 같이 법정대리인의 변경이 있었을 때에도 새로운 법정대리인에 의한 입양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입양 허가재판이 가능한가 하는 점인데,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²³⁾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에서 후견인으로 변경되었고 하여 기존의 법정대리인이 변경 전에 한 권한 행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견해이다.²⁴⁾ 다만, 입양의 보호조치가 더 이상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새롭게 법정대리인이 된 후견인이 종전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입양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법 제17조에 따른 동의 요건과 상담 제공

법 제17조는 부당한 입양 동의의 권유를 방지하고, 입양 동의의 자발성과 무상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제13조²⁵⁾의 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동의 숙려기간이 1주일에서 7일로 수정된 점,²⁶⁾ 친생부모의 동의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의한 입양의 승낙 또는 동의에 대해서도 자발성 및 무상성을 요구한 점,²⁷⁾ 입양 동의 전 법정대리인에게도 입양 관련 상담을 제공할 것을 추가로 요구한 점 등에서

18) 민법상 입양 허가 청구 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인가 또는 입양 허가 심판 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로 현소혜, 주해친족법, 785면 참조.

19) 이때 본국법은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정해지며(법 제2조 제7호),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의 및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3항).

20)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양 동의·승낙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21) 입양허가제의 도입 및 동의 면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백지식 동의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견해로 현소혜(2010), 575-591면 참조.

22) 이에 관해 자세히는 V.3.나.의 서술 참조.

23) 박근정,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법원의 재판 실무 전망과 논점 검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법원행정처·가족법연구회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2025, 92면.

24) 舊 입양촉진특례법의 해석론으로서, 일단 친생부모 등에 의한 입양동의가 있었다면 친생부모에 의한 아동의 인도로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었더라도 후견인의 입양 동의가 재차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현소혜(2010), 564면 참조.

25) 위 조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II.4.의 서술 참조.

26) 위 기간을 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로 소라미(2018a), 321면; 소라미(2018b), 13면 참조.

27) 위 조항에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거나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차이가 있을 뿐이다.²⁸⁾ 다만, 입양의 승낙·동의 전 입양 관련 상담의 주체가 입양기관에서 시·도지사등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²⁹⁾ 및 시·도지사등이 친생부모에게 입양 동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법 제17조 제5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던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제공해 왔던 것을 국가의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입양 동의의 자발성을 확보하고, 원가정 양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3. 입양의 신청 단계: 양부모에 관한 요건

가. 법의 태도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입양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입양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

항). 다만, 해당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되었으므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게 된다.³⁰⁾ 입양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³¹⁾ 해당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³²⁾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 산하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양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한다(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다만, 입양정책위원회는 법 제1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사항 외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시행규칙에 의해 양부모 자격 확인에 대한 심의·의결까지 요구한 것이 법의 위임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8) 그밖에 국내입양특별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문언만 보면 아동 본인이나 친생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입양 상담의 내용에 관해서도 입양특별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개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시·도지사등은 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입양의 승낙이나 동의 전에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① 법에 따른 입양절차, ② 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 ③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④ 입양정보공개청구, 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친생부모에게는 이에 더해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에 대해(법 제1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바, 입양특별법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호와 달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내용과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내용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구조를 택하였다는 점, 파악에 관한 정보가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정보로,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가 양친이 될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로 각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29) 2025. 5. 7.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2025. 7. 19. 시행)는 시·도지사등에게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위 시행령은 시·도지사등이 입양특별법상 입양에 대해 동의권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내입양특별법이 기존 입양특별법상 입양 동의에 관한 규정을 법정대리인에 의한 입양 승낙 또는 동의 및 친생부모에 의한 입양 동의로 나누어 새롭게 규정한 것에 발맞추어 「아동복지법 시행령」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상담의 상대방 및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입양특별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동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특칙이 있으므로, 위 조문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보다 우선적용된다.

30) 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31)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가정환경 조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해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현행 입양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태도와 같다.

32)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단, 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 자격을 확인하려면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는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수령 권한을 아동권리보장원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가정조사 및 양부모 보고서 작성 등에 사실행위 관련 업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에 관해서도 일부 개정이 있었다. 첫째, 기존의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이라는 요건은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법 제18조 제1항 제1호)으로 개정되었다.³³⁾ 둘째, 기존의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부분과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같은 항 제4호) 부분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1조는 양부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보다 상세히 열거하였다.³⁴⁾ 셋째, 시행규칙 제12조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이라고만 규정하였는바, 기존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와 달리 더 이상 양자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 또는 양부모 되려는 자가 국민이 아닌 경우 45세 미만일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³⁵⁾ 넷째,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입양기관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3조 제1항).³⁶⁾

또한 법 제3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입양에 관해 양부모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70조³⁷⁾와의 관계에서 입양특례법 제10조상의 다른 자격 요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양부모에게 적용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³⁸⁾ 이에 법 제30조 제1항은 종래 입양특례법 제10조에 관한 해석론³⁹⁾을 반영하여 법 제18조가 「국제사법」 제20조에 따른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양부모의 본국법과 함께 적용됨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⁴⁰⁾ 이때 ‘본국법’은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정해지며(법 제2조 제7호),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3항).

33) 이 중 정서적 안정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에 의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 또는 심리검사의 촉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4조 제2항).

34) 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 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이 이에 해당한다(시행령 제11조).

35)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나이 차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양특례법 제4조를 비판하는 견해로 장복희(2006), 234면 참조. 국내로의 제자입양 사안을 고려하여 연령 규정을 두지 말 것을 제안하는 견해로 이종혁(2024), 94-95면 참조.

36) 또한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도 파양의 요건과 절차·효과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변화가 있었다(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국내입양특별법으로부터 파양에 관한 조문이 삭제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2조 제2항 제3호).

37) 이러한 「국제사법」 제70조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양자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현소혜(2018), 92-120면 참조.

38) 이 점을 지적하는 문헌으로 석광현, “국제입양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의 제 문제: 입양특례법과 헤이그입양협약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6권 제3호(2012), 382면 참조.

39)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상의 요건들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본국법에 따른 요건들과 누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견해로 석광현(2009), 459면; 석광현(2012), 384면; 석광현,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2016), 113-116면; 현소혜(2018), 88-91, 113면 참조. 실무의 태도도 이와 같았다. 가령 서울가정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합 356 심판(확정) 참조.

40) 같은 취지로 석광현(2023), 334면; 이종혁(2024), 87면.

나. 해석론

법 제9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자가 민법상 양부모에 관한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양부모가 될 자는 성년일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866조,⁴¹⁾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873조,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874조는 당연히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른 입양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입양특별법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⁴²⁾ 혼인 중인 부부만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舊 입양촉진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가 2006. 12. 11. 개정에 의해 폐지된 이상,⁴³⁾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입양에서 양부모에게 혼인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사가 민법상 친양자입양 요건보다 우선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⁴⁴⁾ 국제입양법 제9조 제1항이 보호 대상 아동의 외국으로의 입양에 관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자격과 국내입양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자격을 모두 갖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입양특별법 제30조는 본국법에 따른 자격과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입양에 관해서는 국내입양특별법 제18조가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요건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이 분명하다.⁴⁵⁾ 종래 실무⁴⁶⁾와 헌법재판소⁴⁷⁾ 역시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관련해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론을 택한 바 있다.

4. 결연 단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신청인들 중 법에 따른 양부모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양의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과 결연한다(법 제20조). 결연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결연은 입양 대상 아동의 특별한 필요(special needs)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양부모를 선별하는 절차로서 해당 입양의 결과가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⁴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양특례법은 결연에 관해 규율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입양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으므로,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양부모의 선호와 요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⁴⁹⁾ 이에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정책위원회 산하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법 제20조 제1항 1문, 제12조 제2항 제5호 및 제6항). 결연 시에는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국내입양 우선 추진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 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2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41) 다만, 시행규칙 제12조는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866조의 준용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42) 같은 취지로 박근정(2025), 89면; 석광현(2023), 334면.

43) 이 점에 관해서는 각주 25)의 서술 참조.

44) 같은 취지로 현소혜, 주해친족법, 1069-1070면 참조.

45) 국제입양법에 따른 국제입양에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양부모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 것을 명시한 반면, 국내입양특별법에서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2023. 6. 29.), 국회사무처, 82-83면 참조.

46) 「법원실무제요: 가사[III]」, 사법연수원, 2021, 1155면.

47)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참조.

48) 결연의 의미와 중요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자세히는 현소혜(2021), 181-182면.

49) 소라미(2018a), 314면; 소라미(2018b), 10면; 조소연·전민경(2024), 165면 등.

그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법 제20조 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이를 기초로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하게 된다(법 제21조 제1항). 그런데 양부모가 되려는 자가 결연된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지 않으면 그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을 위해 다른 양부모와 재결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양법 제11조에 준해 결연확인서 발급 전 먼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결연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양에 동의한 경우에는 결연확인서를 발급하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위해 결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가정법원의 허가 단계

가. 입양 허가재판의 청구와 심리

입양 허가재판은 양부모가 되려는 자의 청구로 개시된다.⁵⁰⁾ 이때 청구인은 ①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② 법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⁵¹⁾ ③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④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⑤ 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⁵²⁾를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입양특례법 제11조 제1항과 달리 결연확인서 부분이 추가되고, 양부모 자격 구비 확인에 관한 서류 부분은 삭제되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이 신설되었으므로(법 제21조 제2항),⁵³⁾ 법원은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통해 양부모 자격 구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⁵⁴⁾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21조 제4항),⁵⁵⁾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대법원규칙 제8조).⁵⁶⁾

50)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대법원규칙 제2조).

5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입양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시·도지사등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

52) ①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규칙 제6조).

53)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이하 ‘입양특례법 대법원규칙’) 제4조가 입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만을 규정한 것과 대비된다.

54) 특히 가정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등에게 ①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②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보고서,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④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⑤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 ⑥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⑦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⑧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7조).

55) 특히 가정법원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대법원규칙 제4조 제2항). 입양특례법 대법원규칙 제4조 제2항은 양친이 될 사람의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환경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내입양특별법이나 대법원규칙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56)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②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③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④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나. 입양 허가재판의 기간과 효력

국내입양특별법상 입양 허가재판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양 허가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법 제21조 제3항). 헤이그입양협약 제35조는 입양에 있어서 신속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국내입양특별법 역시 그 정신을 반영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해 신속한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입양 허가청구 인용 심판⁵⁷⁾이 확정됨으로써 법에 따른 입양은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6조 제1항 1문),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법 제25조). 조문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의미는 입양특별법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다만, 법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입양특별법과 차이가 있다(법 제26조 제2항). 사후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입양기관의 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법 제31조 제1항),⁵⁸⁾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의 성립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입양 허가재판이 확정되면,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이미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⁵⁹⁾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양자가 될 아동

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입양특별법 제31조 제2항은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 인도 장소에 관한 조문도 두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국제입양법 제15조 제2항으로 위치 이동되었다.

6. 입양성립 후의 법률관계

가. 입양의 취소

(1) 법의 태도

법은 양자의 친생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재불명을 이유로 그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8조 제1항).⁶⁰⁾ 양친자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법상 친양자입양⁶¹⁾보다 입양 취소 사유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바, 친생부모의 입양 동意的 근거 조문이 달라졌을 뿐 실질적으로 입양특별법 제16조 제1항의 태도와 동일하다. 다만, 입양취소 재판 시 양자의 의견 청취권에 관한 조문을 둔 점(법 제28조 제2항), 입양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른바 '사정판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는 점(법 제28조 제4항),⁶²⁾ 가정법원은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⑤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규칙 제8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의 본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가 신설됨에 따라 본조에서 삭제된 것 외에는 입양특별법 대법원규칙 제3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57) 입양 허가 심판에 대해서는 ① 양자가 될 아동, ②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③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④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⑤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입양허가 청구 기각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10조). 입양특별법 대법원규칙 제8조가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즉시항고권을 부여한 것과 달리, 대법원규칙은 양자가 될 아동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

58)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해 자세히는 V.5.의 서술 참조.

59) 임시양육결정에 관해서는 V.4.의 서술 참조.

60) 이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대법원규칙 제2조). 입양취소 재판의 관할 및 상대방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참조.

61) 민법 제908조의4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 신고를 받은 친생부모에게도 입양취소 청구권을 인정한다.

62) 입양특별법상 입양의 취소와 관련해 사정판결 준용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 견해로 현소혜(2013), 110면 참조. 해석론으로서도 사정판결이 준용된다는 견해로 현소혜, 주해친족법, 1103면. 단, 입양특별법 대법원규칙은 재판상 파양에 관해서만 사정판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입양취소에 관해서는 이를 두지 않았다.

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는 점(법 제28조 제3항)⁶³⁾에서 입양 특례법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입양취소에 따른 효과는 민법 제897조에 따른다. 따라서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며, 입양이 취소된 때부터 양친자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2) 해석론

법에 따라 성립된 입양에 관해 양친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존속을 입양하였다거나, 부부공동 입양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입양 동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민법 제883조 또는 제884조에 따른 입양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친양자입양에 관해 민법 제883조 및 제88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법 제908조의4 제2항이 국내입양특별법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법 제9조).⁶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입양이 성립한 경우에도 일단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 허가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그 입양의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 시 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허가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치 법에 따른 입양이 성립한 것처럼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입양 특례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민법 제883조 제2호에 따라 그 입양을 무효로 보아

야 한다는 견해⁶⁵⁾도 있으나, 국내입양특별법에 민법 제8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양이 불성립한 것으로 보고, 양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를 통해 그 외관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⁶⁶⁾ 이에 더해 국내입양특별법은 입양 허가를 받지 않고 법에 따른 입양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 파양

입양특례법 제17조는 ①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또는 ②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양친, 양자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협의상 파양까지 널리 허용하였던 舊 입양촉진특례법의 태도나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905조의 태도와 달리, 친양자 입양의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8조의5에 준해 파양의 가능성을 좁혀 놓았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 영구적인 대체 가정을 제공한다는 입양특례법의 입법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⁶⁷⁾

그런데 국내입양특별법은 재판상 파양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⁶⁸⁾ 그 결과 현재 법에 따라 성립한 입양에 관해서

63) 입양특례법은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제16조 제2항), 입양취소 후 해당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면 입양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제24조 제1항).

64) 입양특례법 제16조의 해석에 관해 같은 취지로 장병주(2013), 525면; 현소혜(2013), 94면.

65) 박동섭·양경승, 「친족상속법」, 박영서, 2020, 320면.

66) 입양특례법 제11조의 해석에 관해 같은 취지로 현소혜(2013), 94면 참조.

67) 민법상 친양자입양의 파양에 관해 재판상 파양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문현으로 정광수,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양자법과 친권법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13권(2001), 69면; 정조근, “완전양자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6호(1992), 128면 참조. 입양특례법상 파양 사유를 축소하고, 파양 후 자의 복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로 장병주(2013), 526면 참조. 반면 국제입양에서는 입양 아동을 위한 사후관리 목적으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로 현소혜(2018), 100-101면 참조.

68) 이를 지지하는 견해로 김진석·김민정, “파양 제도 관련 국내외 입양법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제80권(2023), 217면.

는 재판상 파양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⁶⁹⁾와 법 제9조에 따라 민법상 재판상 파양에 관한 조문이 법에 따라 성립한 입양에도 준용된다는 견해⁷⁰⁾가 대립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던 개정안들은 모두 파양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었는데,⁷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파양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한 이유에 관해 당시 보건복지부차관은 파양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민법상 파양에 관한 조문이 준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⁷²⁾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민법상 파양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가정 양육이 불가능하여 입양의 보호조치가 내려진 보호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입양관계 해소 시 아동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므로 파양의 가능성을 민법상 입양의 경우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상 파양 조문이 준용된다면 양부모에 대한 때론 행위를 이유로 하는 파양까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입양특별법 시절과 다를 바 없으므로, 개악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호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파양 후 새로운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양취소의 경우에 준해 가정법원이 파양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의 준용만으로는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파양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도 곤란하다.⁷³⁾ 현재로서는 양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라는 법의 입법목적(법 제1조) 및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준용 규정을 축소해석함으로써 민법상

파양 규정이 법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법에 따라 성립한 입양이라 할지라도 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파양이 가능할 수도 있다(「국제사법」 제70조).

V. 국내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체계

1. 개 관

입양특별법 하에서 입양기관은 친생부모로부터 입양 동의를 받으면서 아동을 인도받고, 입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다가 마땅한 예비 양부모가 나타나면 그에게 해당 아동을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아동을 양육하도록 한 상태(이른바 ‘사전위탁’ 내지 ‘입양 전제 위탁’)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을 인도받는 순간 후견인(입양특별법 제22조 제1항)⁷⁴⁾으로서 입양 대상 아동의 거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전위탁의 관행이 불법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원의 입양재판 확정 후 아동을 양부모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양특별법 제31조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⁷⁵⁾ 특히 양부모될 자가 이미 상당한 기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친생부모가 법원의

69) 현소해, 주해친족법, 1107-1108면.

70) 박주영(2024), 100면 참조.

71) 「입양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7,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 제25조; 「입양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53,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제26조; 「입양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360,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제21조 참조.

72) 제21대국회 제395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22. 4. 27.)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위원은 민법상 파양 조문의 준용을 전제로 법안을 검토하였다. 『입양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검토보고서, 5-6면 참조.

73) 「가사소송규칙」 제7조는 재판상 파양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 담당자와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 간에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파양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74) 입양기관의 장에게 후견인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로 김희진 외, 「2021년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 아동권리보장원, 2021, 31-32, 43-44면; 제철웅,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17, 91면.

75) 소라미(2018a), 318-319면; 소라미(2018b), 10, 12면.

재판 없이 입양기관의 장 또는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될 자에게 손쉽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입양특별법은 입양 허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양부모될 자에게 아동을 인도하지 않고 친생부모에 의한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삼되, 다만 아동을 위해 대체적 양육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입양 절차의 각 단계별로 아동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마련하였다.

2. 입양의 의뢰 단계

가. 아동의 보호

아동복지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아닌 한, 입양의 보호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친생부모가 직접 원가정 양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즉시 자녀를 시·도지사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도지사등은 부모가 원가정 양육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적합한 위탁가정 기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⁷⁶⁾

나. 아동의 후견

입양의 의뢰 단계에서 친생부모는 친권자로서 아동의 법

정대리인 지위를 보유함이 원칙이다. 다만, 친권의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일시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청인이 숙려기간 도과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순간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인이 된다(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2조 제3항).

3. 입양의 보호조치 단계

가. 아동의 보호

(1) 아동의 위탁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일시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일단 입양의 보호조치가 내려지고 나면 친생부모에 의한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원가정 양육이 가능한 경우라면 애초부터 입양의 보호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의 보호조치 결정 후 입양성립 전까지 임시적으로 해당 아동을 위해 대체 양육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크다. 이에 대비하여 법은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⁷⁷⁾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기타 적합한 가정⁷⁸⁾에서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

76)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등은 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③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④ 그밖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적합한 위탁가정 기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호조치가 가능하다.

77) 임시양육결정에 관해서는 III.4.가.의 서술 참조.

78) 이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조).

다(법 제13조 제3항, 이하 ‘제13조 제3항 위탁’). 이 경우에도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법 제13조 제4항).

(2) 양육상황 점검 및 보호조치 변경

입양의 보호조치를 내린 시·도지사등은 입양 허가 전까지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해 분기별로 적응 상태 및 발달상황, 양육환경,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본문). 입양 대상 아동이 원가정양육 중인지, 제13조 제3항 위탁 중인지를 불문하나, 특히 제13조 제3항 위탁 중이라면 입양의 보호조치를 내린 시·도지사등을 대신하여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양육상황을 점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다만, 시·도지사등은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⁷⁹⁾

시·도지사는 양육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탁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또한 시·도지사등은 입양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 지체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9조).⁸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아

동을 위해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도 있다(법 제7조 제2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먼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아동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국제입양법 제7조 제2항).

나. 아동의 후견

입양의 보호조치 후 제13조 제3항 위탁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위탁 시부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법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10조 제2항). 친권자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문이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해 이미 법원에 의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 또는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14조 제1항 단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에 대해 입양의 보호조치 후 제13조 제3항의 위탁이 있었다면 후견인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등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 순간부터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이 철회될 때까지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법 제14조 제2항). 다만, 국내입양특별법은 친권이 정지된 후라도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시·도지사등이 친생부모에게 입양절차의 진행 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친생부모의 절차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⁸¹⁾

따라서 종래 입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사설 위탁가정이라도, ①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②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단, 시·도지사등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⑤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⑥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이상이 일반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⑦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 제13조 제3항 위탁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9)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66) 참조.

80) 이 경우 결국 아동이 영구적으로 시설에 방치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문헌으로 박주영(2024), 96-97면 참조.

81) 이러한 통지 제도를 둘 것을 제안한 문헌으로 소라미(2018a), 322면; 소라미(2018b), 14면 참조. 다만, 해당 아동에게 법원에 의해 선

4. 가정법원의 허가 단계

가. 아동의 보호

(1) 임시양육결정

입양 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양육결정을 받아 입양허가 재판 확정 전에 먼저 아동을 인도받을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이러한 임시양육결정 제도는 국내입양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이다. 민법상 친양자입양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이른바 ‘시험양육기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⁸²⁾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전에 미리 양부모와 양자간의 적응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양자될 자가 조기에 양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임시양육결정 제도는 이러한 시험양육기간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입양허가 재판 확정 전에 입양기관이 자의로 아동을 예비 양부모에게 미리 인도하는 입양 전제 위탁의 관행을 근절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으며(법 제22조 제1항),⁸³⁾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해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처분을 함께 할 수도 있다(법 제22조 제5항). 임시양육결정이 내려지면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법 제13조 제3항 위탁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해당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법 제27조). 특히 법은 임시양육결정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법 제40조 제2항), 입양특례법 시절의 관행에 따라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받고도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청구를 하지 않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입양 허가 청구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법 부칙 제11조).

다만, 법은 입양 허가 청구가 있는 후에 비로소 임시양육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입양 허가 청구 시부터 6개월 내에 입양 허가재판이 완료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임시양육 제도가 시험양육기간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임시양육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⁸⁴⁾ 결론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내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미리 임시양육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양육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육상황 점검 결과가 입양 허가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⁸⁵⁾ 또는 법원에 의한

입된 미성년후견인 또는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면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에게 그 상황을 확인한 후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친생부모가 후견인에게 직접 통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2) 고형석,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08호(2008), 63-64면; 권정희, “양자법의 정비를 위한 검토 — 친양자제도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16권 제1호(2002), 67-68면; 윤명석, “친양자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6권(1999), 217면; 이해일, “민법 개정안상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제7권 1호(2000), 171면; 조경애, “친양자 제도의 개선방향(사례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2008), 330면; 조은희, “자의 복리를 위한 친양자제도”, 서울법학 제21권 제2호(2013), 9-11면 참조.

83)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법 제22조 제2항),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대법원규칙 제4조 제2항). 임시양육결정의 취소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같다(대법원규칙 제4조 제1항).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4항 및 대법원규칙 제13조). 임시양육결정은 입양 가정에 대한 모든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동 복리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로 소라미(2018a), 319면; 소라미(2018b), 12면 참조.

84) 3개월 이상의 시험양육기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 이해일(2000), 171면. 6개월 이상의 시험양육기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 고형석(2008), 63-64면; 윤명석(1999), 217면; 조은희(2013), 10면 참조.

85)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7,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 제19조 및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53,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제20조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입양심의위원회에서 입양전제위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임시양육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결정에서 정한 임시양육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입양허가 재판을 완료하도록 심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양육상황 점검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

임시양육결정이 내려지면 가정법원은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통지를 받은 자는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에 대해 입양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분기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법 제13조 제4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⁸⁶⁾가 있으면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해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법 제24조 제4항).

또한 가정법원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를 철회한 경우, ④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양 허가의 청구인, 시·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1항).⁸⁷⁾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자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해야 하며(법 제24조 제2항), 임시양

육 중이던 자는 해당 아동을 그에게 인도해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임시양육 중이던 아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2조 제1항).

한편 법은 임시양육결정 후 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아동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지받은 자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며, 임시양육 중이던 자는 해당 아동을 그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자가 양부모가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나. 아동의 후견

(1) 임시양육결정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위해 임시후견인이 되며,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법 제22조 제3항).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자가 임시후견인이 되는 순간 제13조 제3항 위탁에 의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되었던 시·도지사등 역시 더 이상 후견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이와 관련해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임시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양육에 필요한 범위, 즉 아동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 무 및 거소지정권 정도로 한정된다는 견해⁸⁸⁾가 있다. 하지

제안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양전제위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가정법원에 의한 임시양육 결정 제도가 채택되었다. 당시 임시양육 결정 권한을 가정법원이 가지게 될 경우 입양 허가재판 기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따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 점에 대해 자세히는 제40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2023. 6. 29.), 국회사무처, 81면 참조.

86) 이 때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① 임시양육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② 임시양육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임시양육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③ 임시양육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④ 임시양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임시양육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임시양육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의한 양육이 임시양육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13조).

87)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인에 의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나(법 제23조 제2항 및 대법원규칙 제13조 제2항), 임시양육결정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복할 수 없다(법 제23조).

88) 박근정(2025), 94면.

만 국내입양특별법상 임시후견인은 법원의 사전처분에 의해 선임되는 임시후견인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법정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 국내입양특별법은 시설미성년후견법⁸⁹⁾과 다르게 임시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시행령 제10조 제2항과의 관계상 임시후견인의 권한을 이와 같이 좁게 해석할 경우 통장개설 및 사회복지급여 수령 등 임시양육 중인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재산상의 업무를 대리해 줄 후견인이 없게 되어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 찬성할 수 없다.⁹⁰⁾ 법상 임시후견인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미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임시양육결정시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임시후견인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가 될 아동을 위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나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양육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임시후견인과 기존 후견인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930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양부모가 되려는 자가 임시후견인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기존 후견인의 권한행사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나, 이 점에 대해 국내입양특별법이나 하위법령은 침묵하고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 사유에 따라 후견의 처리를 달리한다. 첫째,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입양 승낙 또는 동의의 철회로 인해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아동에 대해 입양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질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법 제23조 제3항). 둘째, 그 밖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법 제23조 제4항 본문). 단, ① 아동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또는 ② 그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12조). 이 경우에도 역시 기존 후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점, 임시양육결정 후 입양허가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후견에 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

5. 입양 성립 후의 아동보호: 사후서비스의 제공

법에 따른 입양이 성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성립일부터 1년⁹¹⁾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본문). 입양특례법 제25조와 달리 사후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를 입양기관의 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일정한 기준⁹²⁾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

89)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 제4항은 가정법원이 시설 입소 중인 고아 아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해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권한 범위를 ①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90) 위 견해는 임시후견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견인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서술하나, 이는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존재를 간과한 서술인 것으로 보인다.

91) 다만, ① 양부모나 양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나 ② 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92)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67) 참조.

항 제3호).⁹³⁾ 그 밖에 법은 ①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 부분을 신설하였다는 점, ② 기존에 입양 기관에 부여되어 있었던 입양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와 입양 가정을 위한 수시 상담 창구 개설 및 상담요원 배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법 제31조 제2항으로 위치 이동하였다는 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등 사업 지원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법 제31조 제2항),⁹⁴⁾ ④ 국외입양 시 입양기관의 국적 취득에 관한 확인 및 보고 의무, 모국 방문사업 등 실시 의무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로 개정하고, 국제입양법 제16조로 위치 이동하였다는 점 등에서 입양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VI. 결론

국내입양특별법은 해외입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하였던 舊「고아입양특별법」의 태도와 완전히 결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양육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법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친생부모에 의한 입양의뢰·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양부모될 자의 모집 및 입양의 알선을 모두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 놓았던 舊「입양특별법」 시절부터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선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양부모될 자의 입양신청 및 결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새롭게 분배함으로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입양특별법은 원가정 양육의 이념에 따라 입양성립 시까지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을 대전

제로 삼으면서도 원가정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입양이 성립할 때까지 위탁 제도 및 임시양육결정 제도 등을 통해 아동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양 절차가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확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국내입양특별법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2013년 개정 작업 착수 시부터 2023년 전부개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친 타협과 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과 조문의 위치 이동이 이루어진 결과 국제입양법과의 관계에서 체계가 맞지 않거나 민법과의 관계에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마땅히 들어갔어야 했던 규율들이 누락된 경우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입양특별법이 예정하고 있는 입양 대상 아동 및 입양 가정의 상황에 대한 추적 및 지속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라 할 수 있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⁹⁵⁾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적 장치라 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여전히 친생부모의 동의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점⁹⁶⁾ 등은 여전히 아쉽다. 하지만 舊「고아입양특별법」 시절부터 舊「입양특별법」, 입양촉진특별법, 입양특별법, 그리고 국내입양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입양 법제는 계속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바, 국내입양특별법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믿는다.

93) 사후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하며,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부모와 양자를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94)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의무를 입양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기관의 근거 규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입양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95)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의의에 관해 자세히는 국내입양특별법 제34조 및 현소해, 주해친족법, 1049-1050면 참조.

96)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양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입양특별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계류 중이다(2025헌가13).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견해로 소라미(2018a), 323-327면; 소라미(2018b), 14-16면 참조.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3장 민법에 남녀평등을 담기 위한 노력 (2)

3. 동성동본 금혼규정 논쟁

민법안 입법취지 설명이 끝난 후 곧바로 친족상속편 질의·토론으로 들어갔다. 질의·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항목은 역시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둘러싼 것이었다. 정부안에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두었으나 법사위에서는 정부안을 수정하면서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삭제하고 8촌 이내의 혼인을 금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질의나 응답은 반대여건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사위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동성동본 금혼규정 찬성자인 소선규 의원은 “딱한 몇 사람 위해 순풍미숙을 버릴 수 있겠느냐?”며 법률상으로 동성동본은 혼인해도 좋다고 하는 규정이 나온다면 동성혼을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영남 의원 역시 순풍미숙 우호론의 입장에서 “유전자상으로 볼 때에 과학적으로 보아서 확실한 기초의 근거가 없고 우리 사회의 풍속으로 볼 때에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지금까지의 풍속을 파

괴하는 그런 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장경근 의원은 법률의 기능을 도덕과 전부 일치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모계 쪽을 무시한 과학적인 우생학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남계 혈통주의의 존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준 의원은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두되 동성동본 간일지라도 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게 융통성을 두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양일동 의원은 더욱 완강히 반대하였는데, 그는 동성혼이 씨족제도, 대가족제도의 파멸을 가져오는 일종의 악법이라 생각하기에 동성동본의 혼인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 원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3대 국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인 김철안 의원마저도 동성동본 혼인을 절대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둔 정부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지지발언은 여성계의 입장과는 달리 전체 남성 국회의원의 방침대로 보수주의 의견을 추종하자는 의도가 다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분히 담긴 것으로, 여성 의원의 반여성해방적 시각을 보여주는 서글픈 한 예였다.

이처럼 친족상속편의 국회 심의는 동성동본 혼인을 둘러싼 논쟁으로 일관되다시피 했다. 금혼을 주장하는 논지는, 첫째로 한국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고유의 미풍이 내려오고 있고, 둘째로 윤리를 존중하는 고유의 관습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로 동성동본 혼인은 우생학적으로 해가 많고, 넷째로 동성동본 혼인은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것 등이었다.

금혼 폐지를 주장하는 법사위의 입장에서는, 첫째로 동성동본의 금지는 중국 고대의 풍습으로 우리나라에서 긴 역사를 가지지 않았으며, 둘째로 인구가 적었던 고대에서는 동성혼이 곧 근친이었을 것이므로 금혼했고, 셋째로 부계만을 따져 우생학적으로 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며, 넷째로 단군까지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끼리는 혼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두 갈래 견해는 여러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곤 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친족상속편이 본격 논의되고 있고, 특히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논쟁이 뜨거울 때였다. 유림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상놈들이 같은 성끼리 혼인한다”고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동성동본끼리 결혼이 금지된 지금의 제도를 고치지 말라”는 유시를 내렸다. 그러자 자유당 일각에서 장경근 의원이 여성단체의 주장과 비슷하게 제출했던 안건은 철회되고 말았다.

이렇듯 ‘동성동본 혼인 절대 반대’가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여성계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에 나선 정일형 의원은 “1,500만 명을 대표하는 여성동지, 우리 인구의 반이 되는 여성의 권익”을 다소나마 도모하기 위해 나왔다고 전제하고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시킨 정일형 외 33인 수정안’ 토론으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법전편찬위원회 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현행 관습법보다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일보 전진하였

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 편찬위원회와 법사위가 갖추지 못한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법제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치 않았다는 점. 셋째, 친권행사에 있어서 부모공동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또 이날 정일형 의원은 여성문제연구원에서 제출한 청원서를 소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부안과 법사위 수정안은 호주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등의 법률제도적 존재가치가 없으며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자식들이 혼인 후 독립세대를 갖고 별거하는 핵가족 현실에서 호주제도는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고 호주의 권리 의무는 유명무실한 데다 호주상속인에게 특권을 인정함은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이는 또한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세계 입법 추세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둘째,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률혼주의 이외에 거식혼주의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혼인신고 없는 본처가 혼인 신고한 첩에게 정식부인 자리를 내주는 억울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여성법률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셋째, 협의이혼 절차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당시의 협의이혼은 부부의 도장만 찍으면 성립되는 것이어서 남편이 임의로 처의 도장을 찍어다 서류를 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을 당하게 되는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이혼 당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피해상황이 심각함은 여성법률상담소 상담 자료에도 나타난 바 있다.

넷째,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생계대책이 막연한 여성의 사회적 입장을 고려할 때, 재산분여청구권은 여성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지만 처의 이혼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에서는 이혼자의 생활 곤궁에 대한 은혜적 부조가 아니고 종전의 배우자로서의 인격적 존엄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자보다 재혼의 기회가 적은 여성의 현실을 생각할 때 확실히 인정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친권공동행사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아버지의 친권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주의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어머니임을 생각해도 어머니에게 친권이 없음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식을 그리는 모성애를 빌미로 참을 수 없는 혼인생활을 불가피하게 지속케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삶을 극도로 비인간화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친권의 부모공동행사제도의 채택은 세계 입법 추세에도 발맞춘 것이다.

여섯째, 친족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안 채택을 주장했다. 친족범위에 관한 정부안은 관습법과는 달리 부계와 모계 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했고, 또 친족에 있어서 처 측과 부 측과의 차별을 철폐해서 평등을 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정부안을 지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성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정일형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명실공히 헌법 제8조와 제20조에 있는 남녀 평등의 원칙을 살리자는 주장으로 토론을 마쳤다.

한편 민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한 의원은 정일형 의원을 비롯해서 윤형남, 박영종 의원 등이 있었다. 정일형 의원은 여성단체들과 꾸준한 연계를 갖고 여성계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공식적으로 해 왔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상당한 고초가 뒤따랐다.

편집부

고맙습니다

2025년 10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강명재, 강미현, 고은진, 고종현, 권수현, 권예지, 김규민, 김다현, 김민호, 김서연, 김성현, 김세준, 김소영, 김예지, 김은유, 김윤주, 김은빈, 김주현, 김준우, 김지민, 김지원, 김지은, 김현서, 김홍율, 남승현, 박민건, 박재연, 박지수, 서지혜, 신이주, 신재원, 안세현, 양은진, 오극찬, 유현지, 윤상철, 윤지아, 이윤섭, 이정인, 이채린, 임지윤, 장주원, 장진혁, 전영서, 전예란, 정예린, 정 윤, 조예진, 조희서, 주예진, 최관주, 최민지, 최예은, 최윤영, 최은지, 최지원, 최하늘, 최하은, 하유지, 한사랑, 한성주, 한수희, 한아름, 허경민, 황보선우, 황유선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최문원, 이현혜, 천정환, 이승훈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상호 폭력으로 상담 위탁된 부부,
상담에서 대화방식의 중요성 인식하고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어
갈등 해소의 실마리 찾아

2021버3***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부부상담 10회 등 총 14회

상담기간

2022. 6. 8. ~ 2023. 2. 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23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22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1년 9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퇴근 문제로 말다툼 중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된 결과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같이 상담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피해자는 상담 욕구가 강하였다.

행위자는 당뇨가 있고 합병증으로 2년 전 암이 발병하여 콩팥 1개를 절제하였는데 자신의 건강 문제 및 생활 습관 전반적인 것을 폭력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피해자는 결혼 초부터 행위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나 아들 때문에 참고 살았으며 이혼을 고려 중이었다.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는 결혼 초부터 당뇨가 있었는

데 자신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늘 피해자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활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일하다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고 집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지적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흥분하며 집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러 피해자는 정신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피해자는 상담을 통하여 집에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고 행위자가 감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동요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며, 그동안 행위자와 주변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가능한 맞추는 방식으로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소리 지르고 공격성을 보이는 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하였고, 아내가 남편 생각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아내가 함께 있을 때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언어 표현을 줄이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부관계는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으나 여전히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합의한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던 중 다시 갈등이 촉발되었다. 2022년 12월 말경 피해자는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집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아들은 이버지와 부딪히기 싫어 집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안 행위자는 오지도 않을 아들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화를 냈고, 피해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행위자를 보면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왔으며 아들과 같이 1달 정도 지내다가 행위자의 다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많은 것을 느꼈으며 특히 자신의 고집, 방식만 고수해서는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군 입대를 앞둔 아들에게도 부모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고, 아들이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비교, 비난만 하였기에 받은 상처가 컸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충고나 지적보다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응원하는 쪽으로 표현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부부는 종결상담시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나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이혼 여부를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기로 하였고, 행위자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감정 조절 노력을 계속하면서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021버3*폭행(2022버5** 폭행(병합) /
2021버3*** 폭행(2022버5** 폭행(병합))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7회, 부부 교육강좌 2회 (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등 총 16회

상담기간

2022. 7. 19. ~ 2023. 2.3.

상담경과

부부는 사실혼으로 지낸지 2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2021년 11월 사건 당일 남편은 전 직장 여성 동료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하트 이모티콘

표시를 한 것을 본 아내가 이를 시비하여 말다툼하던 중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아내를 벽으로 밀치고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아내는 주먹으로 남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을 핏줄이 폭행하였다.

또, 2021년 12월 사건 당일 남편은 아내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폭행하고 욕설한다는 등 안 좋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에 놓여있던 콜라 페트병을 집어 들어 아내의 골반 부위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린 후 아내의 뒤에서 목을 감싸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아내는 남편의 오른쪽 머리를 때리고, 발로 남편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는 상호간 폭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부부는 초상담시 이혼을 고려중이고 정리할 문제가 많아 잘 헤어지려고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2회기 상담시에는 이혼하지 않고 잘살아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아내는 남편을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아내의 약점을 공격하는 점들이 개선되기 바랐다. 남편은 아내를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지만, 분노를 잘 조절하기 바랐다. 부부는 상대방의 바람을 수용, 실천하기로 합의하고 노력하였다. 상담 중기에 남편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은 개선되었다.

부부는 대화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격유형검사를 통하여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었다. 부부가 하는 사업의 성격상 부부간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었던 점을 반성하고 상호 신뢰하며 존중하기로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2버7** 폭행,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남편) 개별상담 6회, 음주문제상담 3회
(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집단상담 3회(화상으로 실시)

등 총 12회

상담기간

2022. 8. 10. ~ 2023. 2. 1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지 5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남(6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9년에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된 사실이 있다.

행위자는 2022년 2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5회 밀치고, 식탁을 집어던져 부수고 작은 방 입구 중문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트려 총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과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병과받았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 무렵,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납입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한 상태에서 부부가 같이 술을 마시고 해장하려고 라면을 사 왔는데 피해자가 짬뽕을 주문하였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행위자가 가정폭력을 재발하여 재위탁된 점에 유감을 표하였고, 행위자는 폭력을 재발한 것을 깊이 반성하였으며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할 것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술을 무척 좋아하고 술을 마시면 말에 예민해져서 자신이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 끝장을 보므로 피해자의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고 맞추려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어린 아들이 안

정감을 느끼는데 부모의 화목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 행위자는 고1때 부친이 별세하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는데 상담시 시청각 교육을 통해 아버지 기억이 많이 났고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피해자도 술을 조금씩 줄이고 예민한 기운도 줄어들었다. 아이가 자라다 보니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싶어도 줄여야 할 형편이 되었고 회사에서 업무 강도도 줄어들어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부간 상호 작용의 결과로 피해자가 처가 식구들에게 행위자를 칭찬하는 성과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와 종결시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6점으로 평가하였다. 보완할 점으로 근원적인 차이에 기인하여 피해자의 밑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으며 미래가 어찌될지 모르겠다는 불안함도 함께 내비쳤다. 이에 행위자의 선한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이 결혼에 따뜻함을 느끼고 안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행위자는 폭력을 재발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2022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3회(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교육강좌 1회(화상으로 실시)

피해자 (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3회(화상으로 실시)

부부상담 4회 등 총 19회

상담기간

2022. 8. 29. ~ 2023. 2. 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4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

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 모두 재혼이며 각 전혼자녀들은 성년이 되었다.

행위자는 2021년 9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고 하면서 욕을 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부부는 서로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며 상호 음주문제를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행위자는 8년간 단주하였는데 피해자가 음주를 하여 같이 마시게 되었고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는 1주일에 2~3회로 음주 횟수를 줄이면서 부부간 충돌은 재발되지 않았다.

실천과제로 행위자는 계속 단주를 실천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1주일에 1회 음주, 1회 음주량을 소주 2병을 넘지 않기로 하였다. 부부는 각 음주문제상담에 참여하여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기회를 가졌다.

중간점검 결과,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행위자가 단주를 실천하고, 피해자도 절주를 실천하여 부부간 충돌 소인이 줄어든 점이 주요하였다.

종결상담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3점, 현재는 10점으로 평가하였고, 행위자가 전혀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노력을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7~8점, 현재는 10점으로 평가하였고, 피해자가 절주하고 자제하였기에 마음 편하게 지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지금보다 더 개선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향후 실천과제로 운동과 경제활동으로 정하였으며,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5년 10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10/16	14명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23	17명	프로그램 소개와 관계형성	
		10/30	16명	자기돌봄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집단상담	10/1	20명	관계의 정석,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10/15	15명	관계의 정석, 나에게 내가 상을 준다면	
		10/22	18명	관계의 정석, 내 묘비명	
		10/29	17명	관계의 정석, 나를 버티게 하는 힘	
	동지교실	10/15	75명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친 권 ③

● 양육자의 결정과 공동양육

Q 문 15 |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와 남편 모두 자신이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었기에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1심에서 제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지만 남편이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라리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면 안되겠냐는 조언이 있어 고심 중입니다. 공동양육자 지정은 어떠한 경우에 받게 되는지요?

A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합당하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자로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Q 문 16 | 저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자주 응급실에 실려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자가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종교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며 수술을 거부합니다. 이러다가 손자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은데 수술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A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2조의2). 따라서 귀하는 손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용 재판이 있을 경우 곧바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손자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친권은 상실 또는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Q 문 17 | 이혼하고 조카를 키워 온 오빠가 3년 전 사망하자



조카의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카의 모는 재혼하여 아이들도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 조카를 만나러 가보면 목욕도 못한 것 같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걸핏하면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 말로는 준비물 한번 챙겨오는 법이 없고 맞은 흔적들이 자주 눈에 띈다고 합니다. 조카의 모를 만나 따졌더니 아이를 키우기 싫다며 불쌍하면 저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부모 역할을 못하는 조카의 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A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제1항).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924조 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4조 제2항). 또한 친권의 일시정지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4조 제3항). 여기서 친권의 남용이란 신체적·정신적 학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자녀의 취학 거부,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하는 것,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조부모 등 제3자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이릅니다.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여 자녀를 방임하는 것도 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카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심판청구를 한다면 위의

모든 사항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조카의 어머니가 법원에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를 받을 경우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7조의2 제1항 제1호, 제909조의2).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5조의2).

● 친권을 일부제한할 수 있다

Q 문 18 | 3년 전 딸이 사망한 후 10살 된 손녀를 사위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전국을 떠돌며 일을 다녀 손녀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손녀가 걱정되어 저희 집에 데려오고 싶어도 사위가 반대하고 연락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사위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요?

A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상실이 가능하지만, 친권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의2). 한편,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4조의2). 귀하는 사위의 친권상실 또는 일부제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친권상실 청구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선고 등의 판단기준을 참작하여 친

권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저는 2006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저로 하였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을 맡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혼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조은경 상담위원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2024.11-2025.10

책

차이나는 클래스
인공지능 윤리규범학
챗GPT 질문의 기술
책과 도서관
공감 슈퍼맨

걱정이 많아 걱정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
보통의 분노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불편하지만 아이 키우는 데 문제없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변호일기
내향인 개인주의자
리더의 언어사전

다정한 인공지능을 만나다
젠더 스테디
가부장 자본주의
페미니즘들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

2024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각지대 연구
202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2024년 인권보고서

이태영: 악법은 법이 아니다!
세상에 빛을 밝힌 인물: 유일한·장기려·이태영
내가 법을 새로 만든다면
판결 너머 자유
법학방법론

김정욱 | 미래엔아이세움 | 2023
김형주 외 | 태학사 | 2023
이선종 | 영진닷컴 | 2023
윤희운 | 태일사 | 2023
라슈미 서데슈판데 | 에디터 | 2023

그램 데이비 | 세이지 | 2024
전홍진 | 한겨레출판 | 2023
로렌스 스타인버그 | 저녁달 | 2024
하지현 | 은행나무 | 2023
김병후 | 애플북스 | 2024

안예슬 | 이매진 | 2023
백순심 | 설렘 | 2024
엄상익 | 답게 | 2024
조준호, 김경일 | 저녁달 | 2023
김동훈 | 민음사 | 2023

장대익 | 샘터 | 2023
캐럴 스미스 로젠버그 외 | 후마니타스 | 2024
폴린 그로장 | 민음사 | 2023
루시 딜랩 | 오월의봄 | 2023
야요 에레로 | 풀빛 |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 2025

윤해운 | 나무처럼 | 2021
지식의숲 | 지식의숲 | 2023
이지현 | 다른 | 2024
김영란 | 창비 | 2024
오세혁 | 박영사 | 2024

법철학	엄순영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3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전종익 외 박영사 202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상 보호출산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4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5
2025년 법전	현암사법전팀 현암사 2025
2025년 소법전	현암사법전팀 현암사 2025
스토킹의 실제	정현미, 김구슬 나눔사 202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5차 기본계획(2023-2027)	법무부 법무부 2024
2025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법무부 법무부 2025
다문화가정[이혼,혼인] 실무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4
2025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2025
민법주해 1~4	양창수 박영사 2022
주석민법 1~3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가족법연구 VI	김상용 법문사 2025
가족, 법정에 서다	배인구 인티앤 2025
민사 관련 법령집[가족편]	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25
총, 선, 펜	린다 콜리 예코리브르 2023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	최의종 라디오북 2024
너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어서	리라샘 책과이음 2023
파견자들	김초엽 퍼블리온 2023
미치고 흐느끼고 견디고	신달자 문학사상 2023
또 못 버린 물건들	은희경 난다 2023
조금 불편해도 나랑 노니까 좋지	김나무 위고 2024
혼자라는 가족	김보리 다람 2023
나태주의 행복수업	김지수 열림원 2024
이제 이혼합니다	가키야 미우 문예춘추사 2023
돌봄살인	사에 슈이치 이음 2023
버젓한 아버지에게	후카자와 우시오 전망 2023
어머니를 돌보다	린 틸먼 돌베개 2023
선을 넘은 여성들	이진아 한국문화사 2023
2025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이희주 외 북다 2025
2025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김지연 외 현대문학 2024
2025 이상문학상 작품집	예소연 외 다산책방 2025
세상 모든 것의 기원	강인욱 흐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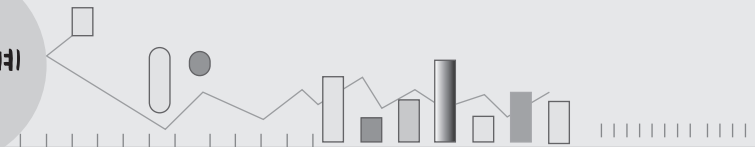
상담소 자료집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
가족과 혼인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5
2024년도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5

외 총 357 권

* 자료분야별: 사회과학 115권, 문학 91권, 법학 68권, 철학 27권, 총류 24권, 기술과학 17권 등 포함

최정아 사서



동지교실 -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가족의 정신 건강과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동지교실'이 지난 10월 15일 본소 강당에서 열렸다. 인하대학교 황순찬 교수가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공황장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사는 공황장애를 “명확한 위협이 없음에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이라 정의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막히는 반응은 실제 위협이 아닌, 몸의 방어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인에게서는 질식감·흉통 등 신체 증상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두드러지며, 과로·수면 부족·가족 걱정 등 생활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치료 방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의 효과를 소개하며, 불안의 원리를 이해하고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식호흡과 이완훈련은 불안 조절에 도움이 되며, 약물 치료는 단기간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심리적 개입이 없으면 재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물 부작용으로 유발된 신체 감각이 공황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전문의의 세심한 관리와 병행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족과 주변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황 증상을 단순한 예민함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며 지지와 공감,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번 강의는 공황장애를 단순한 ‘불안’이나 ‘겁 많은 증상’이 아닌, 몸과 마음의 경보 시스템 오작동으로 이해하고, 가족의 따뜻한 공감 속에서 회복을 도모해야 함을 일깨우

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음 동지교실은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2025년도 전화자원봉사자 모임

상담소의 2025년도 전화자원봉사자 모임이 지난 10월 29일 상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모임은 한 해 동안 상담소를 위해 헌신해 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본소에서 마련한 식사 후 전화상담 사례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유문숙 자원봉사자와 객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김현옥 과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 하였다. (관련사진 2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승훈 평생회원, 상담소에 매년 꾸준한 후원금

이승훈 평생회원(변호사·전 청주지방법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상담소에 꾸준히 운영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소는 소중한 후원을 변민하는 이웃을 돕는 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의 귀한 재원으로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10.17 가족센터 종사자 공통역량교육

- 가족서비스제공을 위한 알기 쉬운 가족법
 - 후견, 상속, 채무조정제도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박채영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13일 본소를 방문한 미국 콜로라도 대학 사학과 임성윤 교수에게 상담소의 출판물인 '상담실기'와 '어떻게 할까요' 등에 실린 상담사례 등에 관해 자문 하였다. 관련하여 최정아 도서실 사서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상 파양 사건 및 이혼사건을 조정하였고, 30일에는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7일부터 28일까지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Ⅱ 수강생들에게 상담 참관 지도를 하였다.

곽배희 소장, 이화학당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

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10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장명수 전 이사장의 이임식을 겸해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김은미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장명수 전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상담소의 이사로 재임 중이다.

2025년 10월 상담통계

총 건수 4,236

법률상담 (3,529)

면접	전화	인터넷
1,050	2,320	159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17	43	147

• 인터넷 정보 이용 123,335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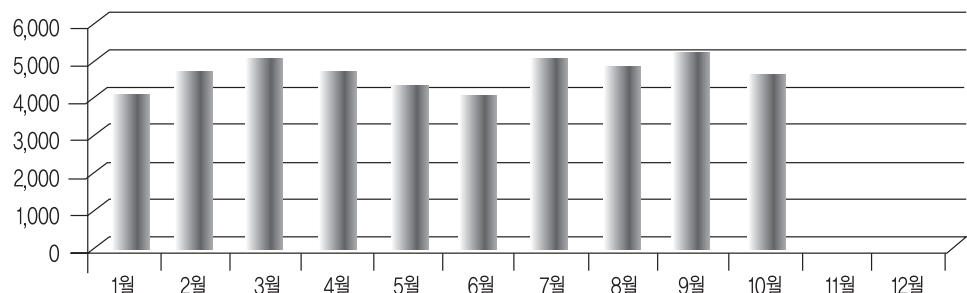
2025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236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529건(83.3%), 화해조정 517건(12.2%), 소장 등 서류작성 43건(1.0%), 소송구조 147건(3.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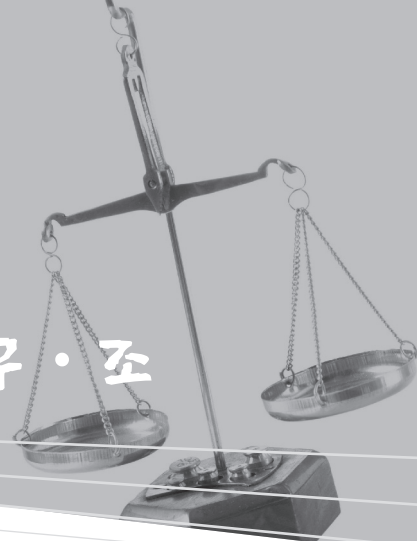
법률상담 3,52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9월에 비해 이혼(27.2%→28.1%), 사실혼해소(0.4%→0.9%), 인지(1.1%→1.3%), 친생부인(0.6%→0.7%), 친생자존부(1.4%→1.5%), 입양(1.1%→1.3%), 부양

(0.8%→1.0%), 유언·상속(8.5%→9.7%), 가족관계등록부(2.3%→2.7%), 파양(0.0%→0.1%), 가사절차(3.4%→3.7%), 민사절차(0.1%→0.2%), 민사기타(0.6%→1.0%), 형사기타(0.7→0.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52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50건(29.8%), 전화상담 2,320건(65.7%), 인터넷상담 159건(4.5%)이었다.

**2025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11년 전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5-1-4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4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는 2013년 경 일을 하러 간다며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긴 후 11년간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다른 사람의 전화는 받으면서 원고의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원고는 2024년경 피고의 주소지로 연락을 달라는 말과 함께 향후 이혼을 할 것인지 등 협의이혼의 의사를 묻는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우체국 등기 조회 결과, 원고의 편지를 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다. 원고의 조카 부부가 원고를 대신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0.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증액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5-1-185, 186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양육비 직접지급

내용 : 청구인(채권자, 여, 40대)과 상대방(채무자, 남, 40대)은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20년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조정성립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였으나 상대방은 2024년 3월부터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매달 사건본인의 학원비로 4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등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를 증액하고, 상대방에게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2025-1-185(양육비 변경) : 결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 10. 24.)

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 사건의 조정조서 중 사건본인에 관한 2025. 11.부터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5-1-186(양육비 직접지급) : 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5. 8.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22년간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5-1-230

담당 : 안혜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87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 초부터 여러 차례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하였다. 2003년경 피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다 10억 원대의 부도를 냈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지낼 곳이 없어 원고의 동생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피고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전혀 받지 못했고, 피고와 연락을 단절한 채 지냈다.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들과 월세방을 전전하며 홀로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대구가정법원 2025. 9.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6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70주년의 해입니다

2025년 1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가정생활과 법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8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6년 7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우리 가족 행복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6년 7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